

# 2015년도 과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7. 28.~ 7. 31.(4일간)
- 감사분야 : 2013년 3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건)				처분계획							
총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시정	주의	징계	훈계	주의	회수	과태료	
11	11	9 (17명)	-	3	8	-	6	11	-	-	

## II 주요 지적사항

### ○ (인사·행정) 유학 휴직공무원 복무관리 정기점검 미흡

- 유학·가사·배우자 외국동반 등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직공무원은 6개월 마다 소속 임용권자에게 성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필리핀 및 아일랜드로 1년 2개월간 유학휴직을 신청한 소속 직원 A가 휴직명령을 받고 1차 필리핀 연수를 마치고 아일랜드 소재 대학에서 2차 연수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휴직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복무확인을 하지 않음.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소방공무원 휴직제도 운영계획

### ○ (예산·회계)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위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고, 법인 카드 사용 등으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류구매로 발생한 법인카드의 인센티브(포인트)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일부 포인트를 소방차량 유류구매 대금으로 직접 사용함.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15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

### ○ (예방·민원)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업무 소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07.08. 개정)」에 의거 2015.01.01.부터 소방 안전관리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개정 법령 연찬 부족으로 공공기관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잘못 안내하여 A역사 포함 5개소의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음.

❖【관련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 (재난대응·안전) 구급 교육훈련 일부 미실시

-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연간 구급교육훈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13년 하반기 병원임상실습 및 등급별 응급처치 교육을 4분기에 실시하지 않고, 2014년에는 하반기 폼블런스 요원 교육, 상반기 병원임상실습 및 등급별 응급처치 1,2분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관련규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수범사례 노후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 편의 증진

### □ 추진 배경

- 민원실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 민원인 대기 장소 및 주차장 협소로 불편 초래

### □ 추진 내용

- 추진기간 : 2015. 5월
- 사업예산 : 7,240천원
- 사업내용 :
  - 민원실 공간 재배치 및 노후 집기류 교체
  - 민원인 대기 의자, PC, 혈압체크기, 음료대 등 편의시설 설치
  - 민원인(장애인) 전용 주차장 증설(2대 → 3대)

### □ 성과 및 기대효과

-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방행정 구현

(관련사진)

